

# 정 보 통 신 원 규 정

(제정 1984. 8. 20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정보통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직무)** 정보통신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 전체 정보화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
2. 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공동활용 방안 조정
3. IT 관련 기기 현황파악 및 구입에 따른 조정
4. 학사·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처리 지원
5. 전산실습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
6. 교내·외 교육·연구 전산망 구축 및 운용관리 <개정 2010.11.30>
7. 정보처리에 관한 계획수립
8. 산학협동 연구사업에 관한 지원
9.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운영 <신설 2010.11.30>
10. 홈페이지 및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·관리 운영 <신설 2010.11.30>
11. 그린IT/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및 관리·운영 <신설 2010.11.30>
12. 교육용 및 업무용 S/W 및 불법 S/W 관리·운영 <신설 2010.11.30>
13. 기타 정보통신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<개정 2010.11.30>

## 제 2 장 조직 및 임원

**제3조(원장)** ① 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원장은 정보통신원을 대표하며, 통할한다.
-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원장은 정보보안책임관으로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한다. <신설 2011.10.17>

**제4조(부서)** ① 정보통신원에 정보통신지원실을 둔다.

- ② 정보통신지원실에 업무별 담당을 둔다
- ③ (삭 제)
- ④ (삭 제)

**제5조(수당)** 본 정보통신원 정보처리요원에게 경력에 따라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위원회 설치)** 정보통신원의 운영·정책·정보보안·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
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0.11.30>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장은 정보통신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정보통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<신설 2010.11.30>
5. 기타 정보통신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<개정 2010.11.30>

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, 참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재 정 및 회 계

제10조(재정) 정보통신원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학생의 실습비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예·결산) 정보통신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 회계년도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5 장 정보통신원 이용

제12조(이용방법) 정보통신원 교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경비) 정보통신원 교육시설의 이용경비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제14조(실습신청) 정보처리 담당교수는 교무처에서 매 학기초에 일괄하여 배정된 시간 외는 정보통신원에 이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1.30>

제15조(이용제한) 원장이 정보통신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6조(외부 수탁업무) 외부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.

제17조(공개강좌) 정보통신원은 필요에 따라 「학칙」 제43조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.>

제18조(사고조치) 정보통신원 정보처리요원 외에 이용자가 컴퓨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보통신원장 또는 정보통신원 운영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교내업무의 전산화

제19조(교내업무의 전산화 의뢰) 교내업무의 전산처리를 원하는 부서는 그 업무의 전산화에 필요한 사항 및 일체의 경비를 산출하여 원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정보통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7 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

제21조(정보보안) 정보보안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세부지침을 시행·관리·운영한다. <개정 2011.10.17>

1. 정보보안 기본활동
2. 정보보안 관리 기본사항
3. 비밀의 전자적 관리
4. 전자정보 보안대책
5. 주요상황별 보안대책
6.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의 보안대책
7. 보안관계
8.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

제22조(개인정보보호) ① 개인정보보호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시행·관리·운영한다.

②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·운영한다.

1. 자동으로 수집·저장되는 개인정보
2. 게시물 등록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
3.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
4.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
5. 링크 사이트·웹페이지
6. 이용자 책임에 관한 통지
7.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
8.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

③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이를 보호·관리·운영한다.

[본장신설 2010.11.30]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5-1-17-4 정보통신원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